

# 서울특별시 강서구 무료법률상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20-73
----------	---------

제출연월일: 2020년 9월 일

제 출 자: 강 서 구 청 장

##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강서구 무료법률상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 2. 제안이유

무료법률 상담자의 대상 범위 확대 및 상담 방식 다양화를 통해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상담자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무료법률상담 기록부 서식을 개정하여 주민의 권익 보호에 기여하고자 함

## 3. 주요내용

가. 무료법률 상담자 대상 범위 확대(안 제5조제1항)

나. 다양한 무료법률상담 방식 신설(안 제5조제4항)

다. 무료법률상담기록부 서식 변경 및 전산화 규정 신설(안 제10조)

##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제22조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입법예고(2020. 7. 29. ~ 8. 18.) 결과: 의견 없음
- 2) 규제 사전심사 결과: 해당 없음
- 3) 부패영향평가 결과: 원안 동의
- 4) 성별영향평가 결과: 해당 없음

## 서울특별시 강서구 무료법률상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서구 무료법률상담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법률문제에 있어”를 “법률문제에서”로 한다.

제2조제2호 중 “자를”을 “사람을”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하는자를”을 “하는 사람을”로 한다.

제3조 본문 중 “강서구”를 “서울특별시 강서구(이하 “구”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단”을 “다만”으로 한다.

제4조제1호 중 “행정·민사·형사·가사사건”을 “행정·민사·형사·가사 사건”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상담자는 관내 주민 및 구 소재 직장인 등으로 한다.

④ 상담은 상담실 방문상담을 원칙으로 하되, 서면·유선 또는 인터넷 온라인상담 등도 할 수 있다.

제6조제2항 중 “자와”를 “사람과”로, “풍부한지식과 경험을 가진자”를 “풍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으로 한다.

제9조 중 “강서구 법률고문의 자문을 받을”을 “있을 때에는 구 법률고문에게 자문을 할”로 한다.

제10조 중 “상담운영”을 “운영책임관은 상담운영”으로, ““법률상담

기록부”를 비치한다.”를 “무료법률상담 접수부를 갖춰 두어야 하며, 전산으로 관리할 경우 전산화된 파일로 갈음할 수 있다.”로 한다.

제11조 중 “범위내에서 상담료와 여비등”을 “범위에서 상담료와 여비 등”으로 한다.

제12조 중 “관하여 필요한”를 “필요한”으로 한다.

별지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서식]

## 무료법률상담 접수부

연번	성 명	성별	상담 일시	상담 분야	법률상담관	
					성 명	서명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생활에서 발생하는 각종 <u>법률문제에 있어</u> 주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전문분야 법률상담을 통하여 주민에게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 하기 위하여 무료법률상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 ----- <u>법률문제에서</u> ----- ----- ----- ----- ----- -----.</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생 략)</li> <li>2. “상담자”란 무료법률상담을 받는 <u>자</u>를 말한다.</li> <li>3. “법률상담관”이란 상담자의 상담에 응하여 답변을 <u>하는자</u>를 말한다.</li> </ol>	<p>제2조(정의) -----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현행과 같음)</li> <li>2. ----- -- <u>사람을</u> ----.</li> <li>3. ----- ----- <u>하는</u> <u>사람을</u> ----- -----.</li> </ol>
<p>제3조(상담장소) 상담장소는 <u>강서구</u> 청사 내에 설치한다. 단, 여건에 따라 외부에 설치할 수 있다.</p>	<p>제3조(상담장소) ----- <u>서울</u> <u>특별시 강서구(이하 “구”라 한다)</u> ----- . <u>다만</u>-----.</p>
<p>제4조(상담분야) 상담분야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주민생활과 관련된 <u>행정 · 민사 · 형사 · 가사사건</u>에 관한</li> </ol>	<p>제4조(상담분야) -----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 <u>행정 · 민사 · 형사 · 가사 사건</u>-----</li> </ol>

사항

2. (생략)

3. 기타 세무, 건축, 교통사고 등  
주민생활과 관련된 사항

제5조(운영) ① 상담자는 서울  
특별시강서구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주민과 강서구 소속 공무원  
으로 한다.

②·③ (생략)

<신설>

제6조(법률상담관 등) ① (생략)

② 법률상담관은 변호사 자격을  
가진 자와 세무사, 건축사 및 공익  
법무관 등 행정법규에 풍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자 중에서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한다.

③ (생략)

제9조(자문) 운영책임관은 상담  
내용과 관련된 법규의 해석과  
적용에 의문이 있을 때에는 강서구  
법률고문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

2. (현행과 같음)

3. 그 밖에 -----  
-----

제5조(운영) ① 상담자는 관내  
주민 및 구 소재 직장인 등으로  
한다.

②·③ (현행과 같음)

④ 상담은 상담실 방문상담을  
원칙으로 하되, 서면·유선 또는  
인터넷 온라인상담 등도 할 수  
있다.

제6조(법률상담관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사람과 -----  
----- 풍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  
-----  
-----.

③ (현행과 같음)

제9조(자문) -----  
-----  
----- 있을 때에는 구 법률  
고문에게 자문을 할 -----.

제10조(기록유지) 상담운영에 대한  
정확한 기록을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별지 서식의 “법률상담  
기록부”를 비치한다.

제11조(수당) 공무원이 아닌 법률  
상담관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상담료와 여비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상담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10조(기록유지) 운영책임관은  
상담운영-----  
----- 무료법률  
상담 접수부를 갖춰 두어야 하  
며, 전산으로 관리할 경우 전산  
화된 파일로 갈음할 수 있다.

제11조(수당) -----  
----- 범위에서  
상담료와 여비 등-----  
--.

제12조(운영세칙) -----  
-----  
필요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무료법률상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 **1. 비용발생 요인**

- 해당 없음

### **2. 미첨부 근거 규정**

- 「서울특별시 강서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제1호

### **3. 미첨부 사유**

- 별도 예산조치 필요 없음

### **4. 작성자: 기획재정국 기획예산과 과장 김정걸**

(담당: 행정9급 최상희 / ☎ 2600-6065)

# 규제 사전심사 검토의견서

## □ 자치법규명

- 서울특별시 강서구 무료법률상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제안이유

- 무료법률 상담자의 대상 범위 확대 및 상담 방식 다양화를 통해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상담자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무료법률상담기록부 서식을 개정하여 주민의 권익 보호에 기여하고자 함

## □ 주요내용

- 무료법률 상담자 대상 범위 확대(안 제5조제1항)
- 다양한 무료법률상담 방식 신설(안 제5조제4항)
- 무료법률상담기록부 서식 변경 및 전산화 규정 신설(안 제10조)

## □ 검토의견

- 동 개정안은 무료법률 상담 대상 확대, 서면·유선·온라인 등 방식 다양화, 상담기록부 서식 변경 등 주민 권익 보호를 위한 무료법률상담 운영 제도를 일부 정비하는 것으로
- 「행정규제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규제심사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

##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

<b>평가번호</b>	2020 - 31				
<b>자치법규명</b>	「서울특별시 강서구 무료법률상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b>평가담당부서</b>	감사담당관	<b>직급</b>	행정7급	<b>성명</b>	김태환
<b>입안주무부서</b>	기획예산과	<b>통보(조치)일</b>		2020. 8. 10.	
<b>관련조문</b>		<b>검토결과</b>		<b>조치사항</b>	
개정안 전부		원안 동의		-	

##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관리번호	2020A서울강서031		
정책명	서울특별시 강서구 무료법률상담 운영 조례		
소관부서	기관명	서울특별시 강서구	
	부서명	기획예산과	
	담당자명	최상희	전화번호 02-2600-6065
성별영향평가서 제출날짜	2020년 8월 4일		
주요 성별영향평가 내용 (기획예산과)	「서울특별시 강서구 무료법률상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무료법률 상담자의 대상 범위 확대 및 상담 방식 다양화를 통해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상담자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무료법률상담 기록부 서식을 개정하여 주민의 권익 보호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성평등에 미치는 영향이 없음		
종합 검토 의견 (성별영향평가책 입관)	<input checked="" type="checkbox"/> 개선사항 없음 <input type="checkbox"/> 자체개선안 동의 <input type="checkbox"/> 개선의견		
	'서울특별시 강서구 무료법률상담 운영 조례' 과 관련하여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특성 반영, 성별통계 구축, 성별 균형 참여와 관련하여 별도의 개선할 사항이 없음		
검토의견 반영계획서	해당 없음		
「성별영향평가법」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  2020년 08월 04일  <b>서울특별시강서구생활복지국장</b> (담당자/연락번호 : 최은영/02-2600-6762)  기획예산과장 귀하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